

삼육대학교 학칙 개정(안) 공고

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7일

교무처장

「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」 일부개정(안) 예고

1. 개정이유

- 1)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
- 2)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생 학습권 확대

2. 주요 개정 내용

1) 학칙 제24조(전과) 수정

기존 2학년 및 3학년, 4학년 학생을 정해진 선택범위를 고등교육법 개정
에 따라 1학년(1학년2학기)부터 전과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2) 학칙 시행세칙 제9장(학과 간 전과)

고등교육법 및 학칙 개정에 따른 '전과' 세부 운영 내용의 개선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**2024. 5. 24(금)**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
메일(prof_data@syu.ac.kr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학과,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회신기한: 2024년 5월 24일 금요일

회신방법: 이메일 prof_data@syu.ac.kr(양식에 따라)

관련문의: 02-3399-3153

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(안)

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행	개정	비고
제24조(전과) 2학년 및 3학년, 4학년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	제24조(전과) 1학년 , 2학년 및 3학년, 4학년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	제24조 내용 수정

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행	개정	비고
제9장 학과 간 전과 제1조(전과의 정원) 생략	제9장 학과 간 전과 제1조(전과의 정원) 현행과 같음	
제2조 (전과의 제한) ①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, 건축학과 5년제는 제2학년 및 제3학년으로 의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. 단,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.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(3학기제) 초, 제3학년 1학기(5학기제) 초, 제4학년 1학기(7학기제) 및 제4학년 2학기(8학기제)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,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③ 생략 ④ 생략	제2조 (전과의 제한) ①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, 건축학과 5년제는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. 단,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. ② 전과는 제1학년 2학기(2학기제)초 , 제2학년 1학기(3학기제) 초, 제3학년 1학기(5학기제) 초, 제4학년 1학기(7학기제) 및 제4학년 2학기(8학기제)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다.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	제2조 (전과의 제한) ① 수정 ② 수정
제3조 (자격)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으로 평균평점이 2.0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.	제3조 (자격)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기 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. 단,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는 그 자격을 따로 정한다.	제3조(자격) 수정
제4조 (절차)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(6월초, 12월초), 제3학년 초(6월초, 12월초)와 제4학년 초(6월초, 12월초)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.	제4조 (절차) 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.	제4조 (절차) ① 수정